

제267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0. 2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10월 22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19 - 60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19년 10월 8일
- 라. 회부일자: 2019년 10월 22일

2. 개정이유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캠프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5호)
- 나.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조항 신설(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2019. 8. 28. ~ 9. 17.)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참여, 봉사과 나눔 활동의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정의와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관련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제5호] 자원봉사캠프 정의 조항 신설
 -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의미
- [안 제13조]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다. 종합 의견

-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근거조항 신설
 - 동 단위의 자원봉사 거점인 자원봉사 캠프에 대해 활동비 뿐만 아니라 운영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기여와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법령상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교부할 수 없으므로 지원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13조 중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을 “활동비를” 또는 “활동비 및 사업비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党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